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
2019. 12. 6(금) 10:00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0년도 청년미래기금운용계획안
(복지교육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0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(안)

1. 개 관

이 기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금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.

2.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[단위 : 천원]

2019년도 말 조성액 (A)	2020년도 운용계획			2020년도 말 조성액(A+B)
	수 입	지 출	증 감 (B)	
500,000	500,000	0	500,000	1,000,000

○ 수입계획

- 일반회계 전입금

500,000천원

3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안은

일반회계 전입금, 기금운용수익금이 주재원이며, 2019년도 제2차 추가
경정예산으로 5억원이 조성되어,

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원임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

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편성되었음.

○ 본 기금안은 금천구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창업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
위해 설치된 기금으로, 기금 설치 이후 본 기금 운용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여
금천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
필요하다고 판단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3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5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6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
2.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
3.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
4.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